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985

발의연월일: 2024. 12. 26.

발 의 자:김위상・김선교・임이자

김소희 • 이달희 • 서범수

박정하 · 김승수 · 김기현

우재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7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으로, 국가공무원은 위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하여 4일의 범위에서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법정 휴가이외에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가가 결정되고 있어 위험 직무에따른 중대재해와 관련한 심리안정휴가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었음.

이에 사업주가 직무와 관련한 중대재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근로 자에게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여 중대재해로 인한 트라우마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함 (안 제 56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6조의2(심리안정휴가 등)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를 경험했거나 이를 목격한 근로자에게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휴가(이하 "심리 안정휴가"라 한다)를 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심리안정휴가의 요건, 기간, 신청방법 및 사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③ 사업주는 심리안정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6조의2 전단 중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를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6조의2, 제57조"로 한다.

제170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5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56조의2(심리안정휴가 등)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를 경험했거
	나 이를 목격한 근로자에게 심
	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휴가(이하 "심리안정휴가"라 한
	<u>다)를 줄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심리안정휴가
	의 요건, 기간, 신청방법 및 사
	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주는 심리안정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
	<u>서는 아니 된다.</u>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2조제3호에도 불구하	특례)
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이하 "현장실	
습생"이라 한다)에게는 제5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	

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3조, 제114조제3항, 제131조, 제138조제1항, 제140조, 제155조부터 제157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생"으로 본다.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신 설>

3. ~ 8. (생략)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
56조의2, 제57조
,
제170조(벌칙)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56조의2제3항을 위반하
여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3. ~ 8. (현행과 같음)